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 ~ 9



제1557호 2009. 7. 22.

공 고

제2009-575호	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에 관한 조례안 2
제2009-576호	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➡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➡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➡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 D-2일 편집·교정 → D-1일 편집·교정 → D일 발간

-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

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575호

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09년 7월 22일

중랑구청장

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·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정시장의 기준 등(안 제7조)

- 1) 도·소매업, 용역업의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

나. 시장활성화구역 지정(안 제3장)

- 1)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는 지역을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의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(안 제20조, 제22조)

- 1) 상인의 동의를 얻어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.

라. 예산의 지원(안 제24조)

- 1) 상인회에서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,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마.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(안 제25조)

- 1) 법령, 조례,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의 사업 목적 외 사용,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교부중지 및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(참조 : 지역경제과장,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: 131-701, 전화:02)490-3367, FAX:02) 490-3656, E-mail : (ympae123@jungnang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로(☎ 490-336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09년 7월 22일

중랑구청장

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상인들의 영업활동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2. 주요골자

가. 위원회 기능(제2조) : 분쟁 조정 범위

- 1)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·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
- 2)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
- 3)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
- 4)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

나. 위원회의 구성등(제3조)

- 1)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,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2)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중랑구청장이 위촉한다.

다. 조정의 신청(제11조)

- 1)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라. 조정절차(제13조)

- 1)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2)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
- 3)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4)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5)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마. 조정의 거부 및 중지(제14조)

- 1) 분쟁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
- 2)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
- 3) 다른 법률에 따라 조정 등을 받은 사항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(참조 : 지역경제과장,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: 131-701, 전화:02)490-3367, FAX:02) 490-3656, (E-mail : syb61619@jungnang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(☎ 490-3367)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